

신년사

: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 노재훈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새로운 도약을 _____ 준비하는 한 해가 됩시다!



노재훈

보건관리전문기관협의회
회장

전국의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는 우리들 삶의 많은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대면으로 하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급변하는 환경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조항 중 보건관리자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2021년 10월 21일부터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보건관리전문기관들이 사업장 관리나 인력 운영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면 활동 위주로 수행해오던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방식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관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사업장 지도



지침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관리를 집중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2단계 해제 시까지 유선 및 서면 등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이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방문 전 유선으로 확진자, 의사환자, 유증상자, 확진자와의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장 방문, 유선 및 서면지도, 유예 여부를 사업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일터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관리 매뉴얼 개발 보급 등 보다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새로운 영역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보건관리 상태보고서 전산 보고에 따른 사업장 보건관리정보 표준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정보교류의 장을 넓혀 나가려고 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7월에 개최하여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보건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할 계획입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보건관리전문기관들이 모두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여 산업보건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와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관리전문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